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42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117호)	이해민의원	2024.10.31.	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03호)	정동영의원	2024.12.19.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2.23.)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 상정/축조심사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398호)	노총면의원	2025.1.9.	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215호)	최민희의원	2025.11.13	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7.)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0.)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공정성과 공공성을”을 “공공성을”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정성 및 공공성을”을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 제3호 · 제6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인 · 가족 · 공동체 등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연대와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리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창달과 다양성 구현에 관한 사항
10. 보도 · 논평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12.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한 사항
17.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u>審議</u>)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그 밖에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第32條(방송의 공공성을 <u>책임 심의</u>) -----</p> <p>-----</p> <p>-----</p> <p>-----</p> <p>-----</p> <p>-----</p> <p>-----</p> <p>-----</p> <p>--<u>공공성을</u>-----</p> <p>-----</p> <p>-----</p> <p>-----</p> <p>-----</p> <p>-----</p>
<p>第33條(審議規程)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의 <u>공정성</u> 및 <u>공공성을</u>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한다.</p> <p>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第33條(審議規程) ① -----</p> <p>----- <u>공공</u></p> <p>----- <u>성 및 공적 책임을</u>-----</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p>-----</p> <p>--.</p>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u>	2. 개인 · 가족 · 공동체 등 사회 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전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연대와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放送소외계층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리 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8.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창달과 다양성 구현에 관한 사항
10. 報道 · 論評의 공정성 · 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보도 · 논평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문화에 관한 사항	11.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 및 시청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14.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생 략)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 ·

공익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17. (생 략)

③ ~ ⑥ (생 략)

에 관한 사항

15. (현행과 같음)

16.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

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

17. 재난 · 위기 상황에서의 정

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보

호에 관한 사항

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
한 사항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